



보낸사람 "구성림"

받는사람 전정원

숨은참조

제 목 RE: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.

날 짜 2019-02-22 16:28:21

안녕하세요?

법무부 이민통합과 구성림입니다

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법령규정을 첨부로 보내드립니다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규정 1항 다목을 보시면 대학에서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,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(15시간)을 이수한 사람으로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법령 상 학위취득과 다문화사회관련 관련과목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(관련학과에서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)

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을 학위과정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위과정 대학은 개강일 전까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현재 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연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(15시간)을 받으면 수료증을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대상자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학위와 관련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위 교육 신청자는 학위취득여부 및 성적증명서에 관련과목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----- 원본 메일 -----

보낸사람 : "전정원" <4459260@bufs.ac.kr>  
받는사람 : "ksl1025@moj.go.kr" <ksl1025@moj.go.kr>  
받은날짜 : 2019년 2월 21일(목) 15:53:30  
제목 :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.

안녕하십니까,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학과사무실 조교 전정원입니다.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다름이 아니오라, 다문화사회전문가 발급 자격 때문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.

본 조교를 포함하여 학부생들이 재차 문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,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2 제1호에

※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 
나목 :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,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 
다목 :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,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,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라고 기재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.

이 부분에서 '학사학위'가 '다문화전공 학사학위'인지, '단순 대학 졸업 학사학위'를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.

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에는 '다문화교육'이라는 세부트랙이 따로 있어서 더욱 혼란이 되었습니다.

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으로 '다문화교육'을 이수해야만 해당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 유선으로 안내받은 내용은, 굳이 전공으로 이수하지 않아도

성적증명서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내용을 확인 할 수만 있다면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

학생들의 진로와 당장의 수강신청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 몇 번의 확인을 하였으나 유선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
따라서 저희는 답변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남기고자합니다.

학생들의 수업과 졸업, 그리고 미래 진로가 얽힌 사항이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,

-단순 과목이수 후 대학 졸업만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?

-졸업증명서에 '다문화교육 전공'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인증에 문제가 없는가?

라고 보주시면 됩니다.

평안한 오후 되시고, 되도록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

정원 드림